

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0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① 출연목적

-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 지원, 차세대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② 출연 예정금액 : 5,910백만원(도비100%)
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 및 창립 총회 의회록 ⇒ 2017년 까지 1,000억 기금 조성
- 산출근거
 - 도비 적립금 : 5,000백만원(2008년부터 2017년까지)
 - 일반기탁금 : 550백만원(농협 50백만원, 신한은행 5백만원)

- 충북학사 수입금 : 180백만원(수도권장학금)
- 장학사업비 : 180백만원(글로벌 인재포럼 등 7개 사업)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5,730,000	3,730,000	2,000,000	5,910,000	180,000

5. 검토의견

□ 제안 배경

-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
 - ※ 2015.5.28. 개정, 부칙 제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
 - (개정전)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의 제한) 제2항
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- (개정후)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
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검토 의견

- 2008년 2월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1,000억원 기금적립을

목표로 매년 충북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여 2015년 9월말 현재 764억원의 기금을 적립함.

< 기금조성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 / '15.9.30 기준)

년도	수 입								지 출 (사업비)	잔 액
	도 출연금	시·군 출연금	문정	청풍	일 기탁금	반 이자	기타 수입	계		
계	42,805	27,991	545	3,014	6,471	9,179	5	90,010	13,529	76,481
2008	5,000	3,500	545	3,014	1,950	55	-	14,064	1,353	12,711
2009	5,000	3,500	-	-	1,107	701	-	10,308	1,970	8,338
2010	5,000	3,500	-	-	1,245	881	-	10,626	1,875	8,751
2011	5,000	3,500	-	-	1,575	1,242	-	11,317	1,864	9,453
2012	5,550	3,500	-	-	125	1,477	5	10,657	1,668	8,989
2013	5,745	3,500	-	-	142	1,782	-	11,169	1,865	9,304
2014	5,780	3,500	-	-	202	1,534	-	11,016	1,944	9,072
2015	5,730	3,491	-	-	125	1,507	-	10,853	990	9,863

- 충북도는 재단의 기금확충을 위하여 2015년에 기금적립금 5,000백만원과 도금고 협력사업비 550백만원, 수도권장학금 180백만원 등 총 5,73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였음.

※ 2015당초예산 : 3,730백만원, 1회추경 : 2,000백만원

-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전년대비 180백만원이 증액된 5,910백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, 이는 충북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의 기금마련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짐.

- 다만,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도 출연금 규모 확대와 운영비 및 일부사업비 절감 조정으로 충당한 부분과,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·군의 출연 불가로 전년대비 3,491백만원의 수입감소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< 2016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>

※ 총예산액(7,460백만원) - 이자수입(1,550백만원) = 출연금(5,910백만원)

(단위: 원)

수입(천원)				지출(천원)			
항목	2015	2016	증 감	항 목	2015	2016	증 감
계	11,341,000	7,460,000	△3,881,000	계	11,341,000	7,460,000	△3,881,000
이 자 수 입	2,120,000	1,550,000	△570,000	인 건 비	254,692	240,000	△14,692
				운 영 비	115,792	90,000	△25,792
				예 비 비	69,252	10,000	△59,252
				장학금지원	1,258,000	1,213,000	△45,000
				수도권장학금	180,000	180,000	-
				인재관리 및 기금확충	52,000	52,000	-
도 출 연 금	5,730,000	5,910,000	180,000	청소년 해외탐방	100,000	50,000	△50,000
				충북인재 리더십캠프	30,000	30,000	-
				대학생 재능기부	20,000	20,000	-
				대학생 토론경진대회	15,000	15,000	-
				글로벌 인재포럼	10,000	5,000	△5,000
시 군 출 연 금	3,491,000	-	△3,491,000	충북고교 친로포럼	5,000	5,000	-
				협력사업비	550,000	550,000	-
				도출연금	5,000,000	5,000,000	-
				시군출연금	3,491,000	-	△3,491,000
				기 타	190,264	-	△190,264

<시군 기금출연 중단 사유>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

(2015.5.28. 개정, 부칙 제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)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의 제한) 제2항 (조항 신설)

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※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출연금 지출이 가능. 도내 시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당하게 출연금 지원 (2015 감사원 감사 지적)